|  |  |  |
| --- | --- | --- |
|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생산·판매·사용 금지 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안부·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72호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생산·판매·사용 금지 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동의를 득함에 따라 공표하는 바이며 공표된 후 30일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 짱마오(張茅)  공안부 부장 꿔성쿤(郭聲琨)  국가질량감독검혐검역총국 국장 쯔수핑(支樹平)  2014년 12월 23일  **제1조**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를 불법으로 생산·판매·사용하는 범죄행위를 제지하고 단속하여 국가안전,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고 공민의 신변안전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를 불법으로 생산·판매·사용하는것을 금지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도청 전문기기라 함은 위장 또는 은폐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술검측에서 도청 전문기기로 인정 결론이 내려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기를 말한다.   1. 무선 발사, 음성 신호 접수 기능을 구비한 발사·접수 기기; 2. 미니형 음성 신호 포착 또는 녹취 설비; 3. 무선통신정보 포착이 가능한 전자접수기기; 4. 연결, 감지 등 방식으로 통신선로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기기; 5. 고체 전송음, 광섬유, 극초단파, 레이저, 적외선 등 기술을 이용하여 음성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기기; 6. 음성접수설비 또는 전자설비의 음성접수 기능에 대한 원격제어를 통해 음성 정보 포착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현저한 경고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기기(소프트웨어 포함); 7. 도청 기능을 구비한 기타 기기.   **제4조** 이 규정에서 도촬 전문기기라 함은 위장 또는 은폐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술검측에서 도촬 전문기기로 인정 결론이 내려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기를 말한다.   1. 무선 발사 기능을 구비한 사진·영상 촬영기기; 2. 미니형 바늘구멍 촬영장치 및 미니형 바늘구멍 촬영장치가 설치된 산진·영상 촬영기기; 3. 뷰파인더 및 재생 모니터가 제거된 초소형 사진기 및 촬영기; 4. 연결, 감지 등 방식으로 화면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기기; 5. 사진기, 촬영기 또는 전자설비의 사진 촬영, 녹화 기능에 대한 원격제어를 통해 관련 화면 정보 포착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현저한 경고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기기(소프트웨어 포함); 6. 도촬 기능을 구비한 기타 기기.   **제5조** 이 규정에서 "가짜 기지국"이라 함은 통신설비입망허가 및 무선전파발사설비모델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휴대폰 이용자 정보 검색·획득 기능 및 불특정 휴대폰 이용자에 대한 메세지 발송 등 기능을 구비하였으며 사용 과정에서 공중 이동통신 주파수 점용, 지역 공중 이동통신망 신호 차단이 가능하고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인정한 불법 무선전통신설비를 말한다.  **제6조**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서 및 질량기술감독부서는 각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를 불법으로 생산·판매·사용하는 행위를 조사·처리한다. 기타 관련부서는 법에 따라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생산·판매·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조사·처리한다.  법률, 법규에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생산·판매·사용 행위 조사·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에 대한 인정 업무는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질량기술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집법(執法) 검사 과정에서 불법 생산, 판매의 혐의가 있는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관련 기기, 설비를 현지 공안기관에 인도하여야 하고 공안기관은 7일 내에 인정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 질량기술감독부서는 공안기관이 발행한 인정 결론을 근거로 법에 의거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 불법 생산·판매 행위와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 불법 판매를 위하여 광고 디자인·제작·대리·발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리해야 한다.  **제8조**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생산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량기술감독부서가 생산 중지를 명하고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판매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판매 중지를 명하고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판매를 위하여 광고 디자인·제작·대리·발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광고경영업자, 광고발표자에게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사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사용 중지를 명한다. 불법 경영활동을 취급한 경우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영활동을 통해 불법소득을 취한 경우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한도 내에서 불법소득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 관련 부서는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판매 행위와 관련 불법 광고 발표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내린 후 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 후법에 따라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처리를 통신감독부서에 제청할 수 있다.  **제13조** 질량기술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2년 내에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생산·판매 활동 취급으로 인해 2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 자가 또다시 불법 생산·판매 활동을 취급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바로 공안기관으로 송치한다.  **제14조**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서 및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사건 조사·처리 과정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구해야 하며; 본 부서의 직책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단서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생산·판매·사용 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폭력, 협박 등 방식으로 국가기관 업무인력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6조**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 및 질량기술감독 등 부서의 업무인력이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법과 기율에 따라 그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이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공안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8조** 이 규정은 공표된 후 30일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  | **禁止非法生产销售使用窃听窃照专用器材和“伪基站”设备的规定**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公安部、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72号  　　《禁止非法生产销售使用窃听窃照专用器材和“伪基站”设备的规定》已经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局务会审议通过，并经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同意，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30日后施行。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局长 张茅  　　 公安部部长 郭声琨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长 支树平 2014年12月23日  **第一条** 为制止和打击非法生产、销售、使用窃听窃照专用器材和“伪基站”设备的违法犯罪行为，维护国家安全、公共安全和社会秩序，保障公民人身财产安全，制定本规定。  **第二条** 禁止自然人、法人及其他组织非法生产、销售、使用窃听窃照专用器材和“伪基站”设备。  **第三条** 本规定所称窃听专用器材，是指以伪装或者隐蔽方式使用，经公安机关依法进行技术检测后作出认定性结论，有以下情形之一的;  　　（一）具有无线发射、接收语音信号功能的发射、接收器材；  　　（二）微型语音信号拾取或者录制设备；  　　（三）能够获取无线通信信息的电子接收器材；  　　（四）利用搭接、感应等方式获取通讯线路信息的器材；  　　（五）利用固体传声、光纤、微波、激光、红外线等技术获取语音信息的器材；  　　（六）可遥控语音接收器件或者电子设备中的语音接收功能，获取相关语音信息，且无明显提示的器材（含软件）；  　　（七）其他具有窃听功能的器材。  **第四条** 本规定所称窃照专用器材，是指以伪装或者隐蔽方式使用，经公安机关依法进行技术检测后作出认定性结论，有以下情形之一的:  　　（一）具有无线发射功能的照相、摄像器材；  　　（二）微型针孔式摄像装置以及使用微型针孔式摄像装置的照相、摄像器材；  　　（三）取消正常取景器和回放显示器的微小相机和摄像机；  　　（四）利用搭接、感应等方式获取图像信息的器材；  　　（五）可遥控照相、摄像器件或者电子设备中的照相、摄像功能，获取相关图像信息，且无明显提示的器材（含软件）；  　　（六）其他具有窃照功能的器材。  **第五条** 本规定所称“伪基站”设备，是指未取得电信设备进网许可和无线电发射设备型号核准，具有搜取手机用户信息，强行向不特定用户手机发送短信息等功能，使用过程中会非法占用公众移动通信频率，局部阻断公众移动通信网络信号，经公安机关依法认定的非法无线电通信设备。  **第六条** 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部门和质量技术监督部门按照职责分工，依法查处非法生产、销售、使用窃听窃照专用器材和“伪基站”设备行为。其他有关部门依法查处与非法生产、销售、使用窃听窃照专用器材和“伪基站”设备有关的行为。  　　法律、法规对查处非法生产、销售、使用窃听窃照专用器材和“伪基站”设备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七条** 公安机关负责对窃听窃照专用器材、“伪基站”设备的认定工作。  　　质量技术监督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在执法检查中，发现涉嫌非法生产、销售窃听窃照专用器材、“伪基站”设备的，应当及时将有关器材、设备送当地公安机关认定，公安机关应当在7日内出具认定结论。工商行政管理部门、质量技术监督部门应当依据公安机关出具的认定结论，对不构成犯罪的非法生产、销售窃听窃照专用器材和“伪基站”设备行为以及为非法销售窃听窃照专用器材和“伪基站”设备提供广告设计制作、代理、发布的行为依法予以处理。  **第八条** 非法生产窃听窃照专用器材、“伪基站”设备，不构成犯罪的，由质量技术监督部门责令停止生产，处以3万元以下罚款。  **第九条** 非法销售窃听窃照专用器材、“伪基站”设备，不构成犯罪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销售，处以3万元以下罚款。  **第十条** 为非法销售窃听窃照专用器材、“伪基站”设备提供广告设计、制作、代理、发布，不构成犯罪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对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处以3万元以下罚款。  **第十一条** 对非法使用窃听窃照专用器材、“伪基站”设备行为，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责令停止使用。对从事非经营活动的，处1000元以下罚款。对从事经营活动，有违法所得的，处违法所得3倍以下罚款，最高不得超过3万元；没有违法所得的，处1万元以下罚款。  **第十二条** 有关部门对非法销售窃听窃照专用器材、“伪基站”设备和发布相关违法广告作出行政处罚或者追究刑事责任后，可以提请通信监管部门对相关网站及时依法查处。  **第十三条** 质量技术监督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对两年内因非法生产、销售窃听窃照专用器材、“伪基站”设备受过两次以上行政处罚，又涉嫌非法生产、销售的，直接移送公安机关。  **第十四条** 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部门和质量技术监督部门查处案件过程中，需要征求有关部门意见的，应当征求有关部门意见；对发现不属于本部门职能的案件线索，应当及时向有关部门通报。  **第十五条** 在查处涉嫌非法生产、销售、使用窃听窃照专用器材和“伪基站”设备的违法犯罪行为时，对以暴力、威胁等方法阻碍国家机关工作人员执行公务的，由公安机关依法予以查处；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六条** 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和质量技术监督等部门的工作人员，在查处案件过程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依纪追究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七条** 本规定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公安部、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负责解释。  **第十八条** 本规定自公布之日起30日后施行。 |